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자립 계획 감독 안내서

1. 해당 회원에게 '자립 계획'을 작성하라고 권유한다.
2.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회 및 장로 정원회 지도자에게 부탁하여 그 회원이 자립 계획을 작성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한다.
3. 회원이 계획을 완성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유형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2010), 5.2를 참조한다.

회원 정보

회원 이름

회원의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스스로의 노력이나 친척을 포함한 가족 및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도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회원의 경우, 교회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아래 표를 활용하여 회원에게 제공된 지원 내역을 모두 기록한다.

날짜	*지원 유형 (해당될 경우)*	*액수 또는 기간*
7월 28일	예) 식료품	예) 2주간

참고: 특수한 상황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예를 들어, 어떤 회원이 여러분에게 자신은 현재 거주 중인 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말할 경우), 복지 전화 상담 서비스(1-855-537-4357,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또는 해당 관리 본부로 연락한다.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2/18. *Bishop's Guide to the Self-Reliance Plan*. Korean. PD60005860 320

자립 계획 감독 안내서—계속

회원 이름

회원의 자립 계획을 계속 확인한다

1. 정기적으로 해당 회원과 만나서 자립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결심 사항을 확인한다.
2. 회원에게 자립 그룹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날짜	*발전 및 달성 내용*	*다음 단계*
8월 23일	예) 집회소를 청소함. 스테이크 자립 그룹 “더 나은 직업을 위한 교육”에 참여함.	예) 자립 그룹에 계속 참여함.

참고: 교회가 해당 회원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발전표를 작성할 때 직장의 근무 시간표를 기록하듯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18. PD60005860 320